



제428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계청에 대한 과세자료 제공 근거 신설〉

■ 문진석·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29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문진석·황운하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5. 4. 29.

다. 회 부 일 : 2025. 4.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정보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종사자가 타인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과세자료 제공 등의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하지만 이를 받은 자 또한 타인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각종 경제지표 등을 통하여 한국사회 빈부격차 및 경제적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음. 특히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 쪽 격차가 심각하여 계층간 반목과 사회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크고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확한 자산상황이나 불평등 수준 파악이 필요하지만 금융소득, 자산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이 금지된 비밀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통계청 국가통계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현행법과 「통계법」 간 일치하지

아니하여 통계청이 국세청 등에서 제공받은 행정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 국가통계 작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그 목적에 맞는 금융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에게 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현 행	개정안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 ③ (생 략)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 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 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 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 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 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 게 된 자에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거래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u>금융위원회 또는 금 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 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 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 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u>	④ ----- ----- ----- ----- ----- ----- ----- ----- ----- ----- ----- ----- -----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u> -----.

<u>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⑤ · ⑥ (생 략)	<u>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는 경우</u> <u>2.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u> <u>3. 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청장이 대상 및 범위를 명시하여 요구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u> ⑤ · ⑥ (현행과 같음)
--	--

□ 통계청은 매년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조사하여 국민의 생활수준과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하고 재정 및 복지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모든 조사항목에 대하여 조사표를 활용한 면접조사만을 실시하였으나, 소득·지출 등과 같이 민감한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가구의 응답거부나 과소·과대 응답 등으로 응답오차가 발생하여 정확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감사원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부채 및 자산 등 원천 행정자료가 있는 경우 설문조사 대신 자료 보유기관으로부터 원천자료를 확보·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사결과¹⁾를 발표한 바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대상과 범위를 명시하여 요구한 거래정보등을 국세청²⁾이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에 명시하려는 취지로 보임.

- 참고로, 현행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³⁾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

1) 감사원, 가계금융·복지 조사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행정자료 등 활용 부적정(감사결과), 2018. 6. 28.

2) 개정안은 통계청장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를 명시하고 있어, 국세청이 이러한 제공자에 해당하게 됨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에 대해서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 과세관청에 제공할 수 있으나, 제4조제4항⁴⁾에 따라 과세관청은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 개정안과 같이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등을 통해 수집한 거래정보등을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경우, 통계청이 안정적인 행정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난 제20대국회에서도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51, 김관영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⁵⁾된 바 있는데, 당시 통계청은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음.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④ 제1항 각 호[중 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4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2017. 2. 22.) 참조

□ 다만, 현재 국세청과 통계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행정자료 제공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통계청은 지난 2018년부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에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지난 2017년 법제처는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한 거래정보등을 국세청에서 취합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가구별·개인별 과세기간 총액을 통계청에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4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⁶⁾한 바 있음.

○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통계청은 「통계법」 제24조⁷⁾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⁸⁾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금융소득과 관련한 행정자료를 제공받고 있으며, 2025년 5월 기준 총 22종의 과세정보를 제공받고 있음.

6) 2017. 6. 22. 법제처 법령해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총액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정보등의 제공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17-0179)

7)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③ 통계청장은 소관 통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표 1] 통계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자료

자료명		자료명	
1	법인세	12	종합소득세(표본)
2	법인세(부가자료)	13	연금계좌지급명세서(표본)
3	부가가치세	14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표본)
4	사업자등록	15	퇴직소득지급명세서(표본)
5	사업소득	16	연금소득지급명세서(표본)
6	사업장현황명세서	17	기타소득지급명세서(표본)
7	사업장현황신고서	18	종합소득세 지급명세서(표본)
8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표본)
9	사업소득지급명세서	20	근로자녀장려금 결정자료(표본)
10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1	온라인거래자료(결제대행,판매대행)
1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22	공익법인공시

(자료: 통계청)

□ 한편, 개정안은 국세청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정보 등’을 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나, 통계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행정자료는 ‘거래정보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통계청도 제20대국회에서 발의되었던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을 행정자료의 성격이 「금융실명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래정보등’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음⁹⁾.

9) 제34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8p

○통계청사회통계국장 최연옥

… 저희가 지금 받고자 하는 게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금융소득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유권해석으로 하다 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담당자에 따라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에 명확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국세청이 통계청에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행정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양 기관 간의 자료 협조 상황, 해당 행정자료가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106